#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575

발의연월일: 2025. 1. 16.

발 의 자:송기헌·강훈식·김상욱

김영배・김태년・박 정

어기구ㆍ이성윤ㆍ조승래

주철현·허 영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25년 전체인구의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데, 노인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인에 특화된 체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목적으로하는 노인특화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노인 친화적인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노인 후생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신설 등).

#### 법률 제 호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의2(노인특화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인에 특화된 체육 프로 그램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특화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노인특화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노인특화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 맞춤형 체육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감면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제5조 및 제6조"를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로 한다.

제9조 중 "제5조제1항 및 제6조"를 "제5조제1항, 제6조 및 제6조의2"

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ul> <li>&lt;진 설&gt;</li> <li>제6조의2(노인특화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인에 특화된 체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특화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li> <li>② 제1항에 따른 노인특화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노인특화제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 맞춤형 체육시설이나기구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li> <li>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li> </ul>	현 행	개 정 안
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 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		제6조의2(노인특화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인에 특화된 체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특화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특화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노인특화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 맞춤형 체육시설이나기구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었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 ②・③ (생략)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 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u>할 수 있다.</u>
)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u>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u>
-	
	<b>.</b>
	②·③ (현행과 같음)
-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u> </u>	제5조제1
<u> </u>	<u>항, 제6조 및 제6조의2</u>
]	
<u>-</u>	
-	
]	